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35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문금주 · 박지원 · 복기왕  
허 영 · 이재관 · 정진욱  
황정아 · 이광희 · 송재봉  
조인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은 장시간의 옥외 작업, 농약·분진 등 유해물질에의 상시적 노출,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 농약중독,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직업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사고와 부상을 중심으로 한 보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간의 노출에 따라 서서히 발현되는 직업병에 대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체계적인 예방·관리 및 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농어업인은 직업병의 진단·치료·재활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는 등 건강권의 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어업인 직업병’의 개념과 그 인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업인 직업병 관리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 등에게 진단·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을 “사망을 보상하고 농어업인 직업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으로,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를 “농어업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로 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농어업인 직업병”이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으로서 제8조의2에 따라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인정된 것을 말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농어업인 직업병의 예방·관리 및 의료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 중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를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농어업인 직업병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농어업인 직업병의 인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와 그 인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인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질병의 종류 및 인정기준에 해당할 것
2. 해당 질병이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것과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을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 직업병의 진단 및 인정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의료·보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업인 직업병의 인정 절차·방법 및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전재해 및 농어업인 직업병에 대한 실태조사”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농어업인 직업병의 예방, 조기진단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농어업인 직업병에 대한 의료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2에 따라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에게 그 직업병의 진단·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직업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하여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 및 건강검진 비용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8조의2(농어업인 직업병의 인

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  
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와  
그 인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  
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  
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는 이를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인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질병의  
종류 및 인정기준에 해당할  
것

2. 해당 질병이 농어업작업 수  
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  
에 노출된 것과 상당인과관계  
가 있을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 직업병  
의 진단 및 인정에 관한 전문  
적인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의료·보건 등 관련 분  
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

제15조(통계의 수집·관리 및 실태조사 등)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구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업인 직업병의 인정 절차·방법 및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통계의 수집·관리 및 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안전재해 및 농어업인 직업병에 대한 실태조사-----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농어업인 직업병의 예방, 조기진단 및 건강관리를 위한

5. (생략)

② (생략)

<신설>

사업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농어업인 직업병에 대

한 의료비 등의 지원)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2에

따라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인

정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

자에게 그 직업병의 진단·치

료·재활 등에 필요한 의료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어업인 직업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하여 농어업인 및 농

어업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

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의

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

라 지원되는 비용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 및

건강검진 비용 지원의 대상 · 범위 ·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